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 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4호 및 605호, 2023.12.26.)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2월 26일(월)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처(식품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3-604호의 주요 내용>

-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나. 조미김 식품유형 명칭 개정
-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공고 제2023-605호의 주요 내용>

- 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 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
-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또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관련협회에서는 식품 관련 소속기관 및 부서에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안)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우리 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604호, 2023.12.26) 1부.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605호, 2023.12.26) 1부.

3.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3-605호 관련)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56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국가기관(19개 기관), 17개 시도,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17개 시도 축산과, 지자체 위생관련 부서, 소비자단체 등, 식품 관련 단체, 식품위생검사기관, 축수산물 관련 단체, 산하기관, 농업관련 부서, 시도 식품안전관리과

주무관 **천상희** 연구관 **김혜정** 식품기준과장 **박종석** 전결 2023. 12. 26.

협조자

시행 식품기준과-11421 (2023. 12. 2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연구심사동A 5층 / www.mfds.go.kr
511호 식품기준과

전화번호 043-719-2417 팩스번호 043-719-2400 / shcheon@korea.kr / 대한민국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